
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결과 보고

2013. 11.



고용통계과

목 차

I. 회의 개요	1
II. 회의 안건	2
III. 개정안의 목표와 기본 개념	2
IV. 일에 관한 정의와 가이드 라인	4
V. 노동저활용 지표	10
VI. 그 밖의 논의사항	14
[참고] 국제 종사상 지위분류(ICSE-93)의 개정	17

I 회의 개요

□ **회의명** :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*(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)

* 고용통계를 담당하는 각국 대표들의 모여 국제기준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회의체로 매 5년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개최됨

□ **일시 및 장소** : 2013.10.2.(수)~10.11(금), 국제노동기구(제네바)

□ **주관기관** : 국제노동기구(ILO)

□ **참석자**

- **우리나라**: 고용통계과장, 빈현준서기관,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분석과장, 장기영사무관, 정향숙사무관 참석
- **해외**: Mr. G. Ryder(ILO 사무총장), Mr. R. Diez de Medina (ILO 통계국장), UN, WB, WTO, Eurostat 등 국제기구 대표, 노사대표, 미국, 영국, 중국 등 각국 대표 등 300여명 참석

□ **주요일정**

일자	주요 일정
10.1(화)	인천 출발 → 제네바(스위스) 도착
10.2(수)~11(금)	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참가
	Part I : 일반보고서(general report)
	Part II : 일, 고용 및 노동력저활용 통계 (statistics of work,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)
10.12(토)~13(일)	제네바(스위스) 출발 → 인천 도착

II

회의 안건

□ Part I . 일반보고서(general report)

- 제18차 총회 이후 ILO의 통계적 노력*, 고용의 질, 종사상지위 개편, 녹색 일자리, ICLS의 개최주기, 노동통계 관련 향후 작업

* 비공식 고용,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선, 소득통계, 아동노동,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, 협동조합, 사회적대화, 일과 연계된 폭력, 이주노동, 노동통계 생산에 있어서의 성주류화(gender mainstreaming) 등

□ Part II . 일, 고용 및 노동력저활용 통계

(statistics of work,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)

- 일(Work)에 대한 정의를 2008 SNA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였으며, 노동저활용(Labour underutilization) 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

III

개정안의 목표와 기본 개념

□ 개정안의 목표

- 노동시장과 노동저활용*을 모니터링하는 기준 마련

* 영문으로는 최근 Unmet need for employment에서 다시 예전에 사용하던 Labour underutilization으로 표현이 변경되었음

-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모든 일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 제공

- 인구집단별(성별, 연령, 교육정도 등) 다른 형태의 일*에 참여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생산과의 관계 분석

* 모든 Work 중에서 Employment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

□ 개정 범위

- 일의 형태(forms of work)로 정의되는 4가지 종류의 일*에 대한 개념과 정의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
 - * 자가생산(Own-use production work), 취업(Employment), 무급수습업무(Unpaid trainee work), 자원봉사(Volunteer work)
- 노동력상태 및 주된 일의 형태에 따른 인구분류의 기준 마련
- 노동저활용(Labour underutilization) 지표의 기준 마련

□ 일(Work)의 개념

- 일(Work)은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
- 비공식 부문의 일도 포함하나, 재화, 서비스 생산과 무관한 행위(구걸, 절도 등), 자기 돌봄(몸단장, 위생 등),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행위(수면, 학습, 유희활동 등)는 제외됨
- 일은 생산목적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자가생산, 취업, 무급 훈련, 자원봉사, 그 밖의 일(무급의 강제노동 등)로 구분됨

생산 목적	최종 자가소비		타인에 의한 소비				
	일의 형태	자가생산		취업 (임금, 이익)	무급 훈련	그 밖의 일	자원봉사
서비스		재화	영리 또는 비영리 기구 내				가구 내 재화
2008 SNA 와의 관계	SNA 생산에 포함						
	SNA 일반 생산에 포함						

□ 통계적 단위

- 사람수(persons)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관한 통계의 기본단위
- 일자리(jobs)는 한사람이 하나의 경제단위에서 행한 업무의 단위(취업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단위)
- 일 활동(Work activity)은 다른 형태의 일과 관련 업무의 단위
- 일 활동들이 모인 활동집단(Activity clusters)을 통해 취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는데 유용

□ 인구의 분류

- 노동력 상태에 따른 분류
 - 취업자, 실업자, 비노동력인구(Persons outside the labour force)로 구분되며, 현행 기준과 동일
 - 복수의 노동력 상태를 가질 경우 우선성 규칙(Priority rule)에 따라 취업자, 실업자, 비노동력인구 순으로 우선 파악됨
- 주된 일의 형태에 따른 분류
 - 주된 자가생산자, 주된 취업자, 주된 무급훈련생, 주된 자원봉사자, 주로 다른 형태의 일을 한 사람, 비생산적 활동만 한 사람
 - 모든 일 활동은 비생산적 활동에 우선하며, 다른 형태의 일 중에서는 주된 일이 우선시 됨
- 노동력 상태나 주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인구는 짧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기준연령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됨

IV 일에 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

□ 일의 형태에 따른 조사대상기간(Reference period)

- 조사대상기간은 일에 따른 참여강도와 노동시간의 배치 등을 고려해 정해졌으며, 1시간 기준(One-hour criterion)은 공통 적용
 - 취업: 7일 또는 1주일
 - 재화의 자가생산, 무급훈련, 자원봉사: 4주 또는 1개월
 - 서비스의 자가생산: 1주일(7일) 중 1일 또는 1일 이상

□ 자가 생산활동(Own-use production work)

- 기준연령 이상의 사람이 짧은 대상기간동안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활동*
 - * 기준연령 이상 기준과 1시간 이상 기준은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됨
- 재화생산: 농어업.사냥.채집활동, 장작.연료 저장, 관개, 직조, 가구.의복.내구재 제작, 거주지.농장 건설(수리) 등
- 서비스제공: 가계부 쓰기, 상품구매, 음식준비, 쓰레기.재활용 처리, 세탁.장식.거주지 유지, 아이 돌봄, 어른 봉양 등
- ‘자가사용(for own final use)’이란 생산의 목적이 생산자 자신, 가구원,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용이나 소비를 의미
- 생산의 목적은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정해지며, 주로 자가소비하면서 일부를 판매, 교환하더라도 자가생산에 해당
- SNA 지원, 산업별 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가생산 자료 필요
 - 노동시간, 추정된 생산가치, 가구원(가족)에 의해 소비된 재화량, 총량 또는 가치, 팔거나 교환된 양 또는 가치

□ 취업(Employment)

- 기준연령 이상의 사람이 짧은 대상기간동안 급여(pay)나 이익(profit)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활동
 - 적어도 1시간 이상 일한(at work) 취업자와 일시적 사유나 노동시간 조정*에 따라 일하지 않은(not at work) 취업자로 구분
- * 근무지 이동, 유연근무,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적 휴가 등
- ‘급여나 이익을 위해(for pay or profit)’란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될 보수와 교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의미
 - 실제 임금이나 봉급을 받지 않았고,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음
 - 개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보수와 가족(가구원)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도 포함되며, 현금이나 현물의 추가분도 포함
- ‘일시휴직자(Persons on temporary absence)’는 이미 현재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, 짧은 경과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지만, 휴직중에도 일자리에 결착도가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
 - ‘계속적인 일자리 결착도(Continued job attachment)’는 휴직사유, 경우에 따라 취업관련 소득의 수령, 휴직기간 등에 따라 결정
 - 짧은 경과기간을 특성으로 하는 일자리 결착도가 높은 사유 : 자신의 병가, 공휴일, 방학,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
 - 일자리 결착도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유 : 부모봉양, 교육휴가, 타인돌봄, 파업, 폐업, 경제활동 감소 등이며, 법정 기간을 고려하되 3개월 이내일 경우 인정

○ 취업자에 포함되는 사례

- 단일 경제주체에서 현재 일자리나 다른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훈련이나 기술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
- 현금, 현물의 급여를 위해 일하는 도제, 인턴, 훈련생
- 취업촉진프로그램에서 급여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
- 일부 가구원, 가족이 소비하더라도 주로 판매, 교환목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
- 취업관련 소득의 수령여부와는 상관없이 오프시즌 동안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한 계절노동자
- 동일 또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하거나, 동일 또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 가족의 일을 한 사람
- 현금이나 현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일하는 군인, 징집병, 공무원

○ 취업자에서 제외되는 사례

- 무급의 도제, 인턴, 훈련생
- 실업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
- 생산과정과 관련 없는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
- 급여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, 현금이나 현물을 이전 받은 사람
- 오프시즌 중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은 계절노동자
- 일자리에 복귀할 권리를 획득했으나, 구체적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였고, 임금수령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사람
-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무기한 해고자

□ 무급 훈련(Unpaid trainee work)

- 기준연령 이상의 사람이 짧은 대상기간동안 경험.기술획득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무급의 모든 활동*

* 기준연령 이상 기준과 1시간 이상 기준은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됨

- ‘무급(Unpaid)’이란 일이나 노동시간의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의 보수가 없음을 의미(소액의 보조금, 임금 1/3미만의 급료 등 수령 가능)
- ‘다른 사람을 위해(for others)’이란 가족 또는 비가구원이 운영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이루어진 활동
- ‘현장경험과 기술획득(Acquiring workplace experience and skill)’은 자격요건이나 인증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

○ 무급훈련생에 포함되는 사례

- 무급의 훈련, 도제, 인턴
- 취업촉진프로그램 내에서 생산과정과 관련된 무급의 직업훈련생

○ 무급훈련생에 포함되는 사례

- 일자리와 관련된 수습기간 중의 무급 훈련
- 일반적인 OJT 교육이나 평생교육(가구원이나 가족이 소유한 시장 및 비시장 단위 포함)
- 자원봉사 관련된 사전교육, 학습
- 자가생산과 관련된 학습

- 무급훈련의 분석을 위해 산업, 직업, 노동시간 등의 자료 필요

□ 자원봉사(Volunteer work)

- 기준연령 이상의 사람이 짧은 대상기간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무급.비강제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*

* 기준연령 이상 기준과 1시간 이상 기준은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됨

- ‘무급*(Unpaid)’이란 일이나 노동시간의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의 보수가 없음을 의미(소액의 보조금, 급료, 용돈 수령 가능)

* 자원봉사의 무급 기준은 무급훈련의 무급 기준과 거의 동일

- ‘비강제적(non-compulsory)’이란 민사, 법적, 행정적 요청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문화.종교적 특징에 의한 행위

- ‘다른 사람을 위해(for others)’란 영리.비영리기관을 통하거나 위해서 또는 가구원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직접한 행동

○ 자원봉사에 포함되는 사례

- 자기도움(self-help), 상호원조(mutual aid), 공동체에 기반한 그룹간 원조 등을 통해 이루어진 활동도 포함

○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

- 법정, 국가에서 강제한 서비스, 징역, 강제적 국방서비스
-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무급의 일

- 취업시간 중이거나 고용주의 허가 하에 유급휴가 중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해진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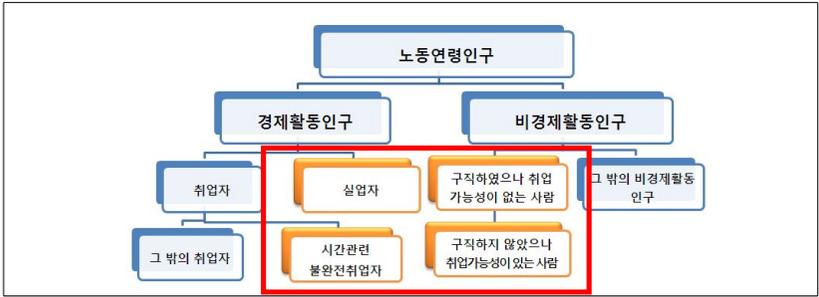
○ 자원봉사의 분석을 위해 산업, 직업, 노동시간 등의 자료 필요

V

노동저활용 지표

□ 노동저활용(Labour underutilization)의 개념

-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의미하며,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, 실업자, 잠재노동력으로 구성됨



- (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)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,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,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적은 사람
- (실업자) 취업하지 않았고, 4주 안에 구직활동을 했으며,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
- (잠재노동력)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거나, 또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

구분	일하지 않았음	구직활동	취업가능성	원하였음
실업자	○	○	○	-
비가능 구직자	○	○	×	-
가능한 잠재구직자	○	×	○	-
의지있는 잠재구직자	○	×	×	○
순수비경인구	○	×	×	×

□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(Time-related underemployment)

- 취업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면서, 짧은 대상기간동안 추가 취업을 원하고,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취업이 가능한 취업자
 - '노동시간(Working time)'은 측정목적에 따라 단기적 상황에는 실제근로시간을 장기적 상황에는 평소근로시간을 의미함
 - '추가적 시간(Additional hours)'이란 현재의 일을 더하거나, 새로운 일을 추가적으로 하거나,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
 - '기준시간(Hours threshold)'은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이나 최빈값 또는 노동시간 규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, 전일제(full-time)와 시간제(part-time) 취업을 구분하는 경계시간이 됨
 - '추가취업 가능성(Availability for additional work)' 기간은 국가적 상황에 따라 일자리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결정
- 적용되는 노동시간 개념에 따라 추가취업을 원하고, 가능한 다양한 불완전취업자의 확인이 가능
 - 평소근로시간 < 기준시간, 실제근로시간 < 기준시간
 - 평소근로시간 < 기준시간, 실제근로시간 > 기준시간
 - 경제적 사유(일시해고, 노동감소 등)로 인해 실제근로시간 < 기준시간
 - 3가지 그룹에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분리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
 - 노동시장에 대한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압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별도 파악하는 것이 유용

□ 실업자(Unemployment)

- 취업자가 아니면서, 구체적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였고,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
- ‘취업자가 아님(not in employment)’은 취업자를 판단하는 짧은 대상기간 동안 평가되어지는 것임
- ‘구직활동(Activities to seek employment)’은 지난 4주 또는 1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한 활동을 의미
- 구직활동 사례

- 자금조달 또는 허가나 면허를 얻기 위해 지원하는 행위
- 토지, 부지, 장비, 공급물품, 경작에 투입될 물품을 찾는 행위
- 친구, 친척 또는 다른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
- 공공, 민간 취업서비스센터에 등록하거나 접촉하는 행위
-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거나, 공장부지, 농장, 시장 등을 확인하는 행위
- 신문이나 온라인 일자리 광고를 올리거나 답하는 행위
- 전문 사이트나 SNS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거나 업데이트하는 행위

-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활동인지, 사업체 자체의 일인지는 사업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*을 기준으로 정해짐

* 영업시작을 위해 등록할 때, 첫 번째 주문을 받았을 때, 재원이 이용 가능할 때, 필요한 인프라나 재료들이 준비될 때 등

- ‘취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재 가능(Currently available to take up employment)’하다는 것은 ‘취업 측정 대상기간 현재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’라는 의미

* 실업의 적절한 파악을 위해서 (대상기간+2주)까지 확장할 수 있음

○ 실업자에 포함되는 사례

- 발령대기자*(Future starters)는 이미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업자로 간주
 - * 취업하지 않았고, 취업하는 것이 현재 가능해야하며, 발령대기 기간은 국가적 상황에 따르지만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
- 취업촉진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훈련 중인 사람*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업자로 간주
 - * 취업하지 않았고, 취업하는 것이 현재 가능해야하며, 일자리 제안 후 일을 시작하게 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
- 실업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구직기간*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, 구직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장기실업자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
 - * 구직시작 시기와 일을 그만 둔 시기 중 짧은 것으로 측정

□ 잠재노동력(Potential labour force)

- 비노동력 중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(Unavailable jobseekers) 또는 취업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구직자(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)를 의미
 -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: 구직활동(○), 취업가능성(×)
 - 취업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구직자: 구직활동(×), 취업가능성(○)
 - * 취업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구직자 중에서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(Discouraged jobseekers)를 별도 파악할 필요
 - ** 구직활동이나 취업가능성은 없으나, 취업을 원하는 의지 있는 잠재적 구직자(Willing potential jobseekers)도 파악할 필요
- 잠재노동력을 집단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성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야함
 - 노동저활용 지표 중 LU₃, LU₄의 분모는 확장된 노동력(Extended labour force: Labour force + potential labour force)을 사용

VI 그 밖의 논의사항

□ 공표 지표

- 지표는 기본적으로 성, 연령, 교육, 지역별로 공표되어야 함
- 노동시장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3가지 지표 그룹
 - 사람수(노동력, 비노동력인구, 취업자, 실업자, TRU, 잠재노동력 등)
 - 노동연령인구에 대한 비율 지표(고용률, 노동력 참가율 등)
 - 노동력(또는 확장된 노동력)에 대한 비율 지표(노동저활용 지표)

[참고 1] 노동저활용 관련 핵심지표(한 지표 이상을 반드시 공표)

- $LU_1: [\text{실업자}/\text{노동력}] \times 100$
- $LU_2: [(\text{TRU}^* + \text{실업자})/\text{노동력}] \times 100$
 - * TRU(Time-related underemployment)
- $LU_3: [(\text{실업자} + \text{잠재노동력})/\text{확장된 노동력}^*] \times 100$
 - * 확장된 노동력(Labour force + Potential labour force)
- $LU_4: [(\text{TRU} + \text{실업자} + \text{잠재노동력})/\text{확장된 노동력}] \times 100$

- 다른 형태의 일에 관한 지표로 참가율, 노동시간 관련 지표
- 노동시간에 따라 SNA 생산계정 내(또는 외) 노동투입
- 그 밖의 지표(비공식부문, 취업자의 구직, 소득, 기술, 시간에 관한 부적절 취업, 자영업자의 불충분 노동, 총노동시장 흐름)

[참고 2] 비노동력인구(Persons outside labour force)의 분류

◇ 노동시장 정착도에 의한 분류

- a) 구직활동(○) & 취업가능성(×)
- b) 구직활동(×) & 취업가능성(○)
- c) 구직활동(×) & 취업가능성(×) & 취업희망(○)
- d) 구직활동(×) & 취업가능성(×) & 취업희망(×)

◇ 구직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분류

- a) 나이, 질병, 장애, 학업
- b) 가족에 관련된 사유(임신, 육아 등)
- c) 노동시장적 사유(적당한 일자리를 구하는데 과거 실패, 경험.자격.기술 부족, 지역적 이유, 최근에 직업 상실)
- d) 인프라 부족(자산, 도로, 교통, 취업알선기관 등)
- e) 다른 소득의 존재(연금, 임대수입)
- f) 권리박탈

◇ 주요 활동 상태에 따른 분류

- a) 학업, 무급의 수습업무, 상품의 자가생산, 서비스의 자가생산
- b) 자원봉사, 자기돌봄(질병 또는 장애), 여가(사회, 문화, 레크레이션활동)

□ 자료수집 빈도와 보고

- 반기: 취업자, 노동력, 노동저활용 관련 합계 지표(단기동향 분석)
- 연간: 노동력, 노동저활용 관련 상세지표(노동시장 구조분석), SNA 생산계정에 기여한 일자리와 활동에 관한 노동시간
- 2년이상: 자가생산, 무급훈련, 자원봉사자 수 및 노동시간, 기타 특별주제(노동이주, 유아노동, 취업이동 등) 관련 통계

□ 인구범위 와 연령제한

- 인구는 지역내 거주하는 상주인구가 대상이며, 특히 국가 밖에서 일하는 상주인구도 포함
- 노동력조사 대상이 되는 노동연령인구(Working-age population)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일정 제한이 필요
 - 연령하한은 최소 취업연령, 법령상 연령, 의무교육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, 연령상한은 따로 두지 않음*
- * 일 외의 활동파악, 취업에서 은퇴로의 이전 등을 파악하기 위함

□ 국제보고

- 각 통계는 기본적으로 5세단위로 표준화된 연령대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, 최소는 15~19세, 최대는 75세 이상임
- 노동저활용 지표(LU₁~LU₄)에 관한 보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함

□ 현행 기준

Paid-employment	◦Employees	
	◦Employers	
Self-employed	◦Own account workers	
	◦Members of producers' cooperative	
	◦Contributing family workers	
	◦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	

- ICSE-93에서 가족종사자(Contributing family workers)는 영리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만 한정(자가생산, 자원봉사 제외)
- 다만 반드시 무급일 필요는 없음*

* 가족종사자가 기여한 부분이 가구의 이익을 증대시켰으나, 가구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가족종사자에게 재분배할 수도 있고, 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□ 현행 기준의 한계

- 고용원과 고용주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취업자(법인소유 경영자, 도급원 등)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음
- 법인 소유경영자(Owner-managers of incorporated enterprises)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) 정기적인 급여를 그들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고용원(Employee)으로 간주되어짐 b) 회사에 대한 지배권, 임금근로자의 계속적 보유, 가족 종사자들로부터의 조언가능 등 자영업자의 특징이 있음 |
|---|

- 도급원(Contractors)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) 세금을 내는 분리된 사업자로 당국에 등록 b) 고용된 기관이 사회보장비용을 책임지지 않음 c) 계약관계가 정규고용원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d) 임금근로자와 일치하는 명백 또는 암묵적인 계약을 하고 있음 |
|---|

⇒ ICSE-93에서는 주식회사 소유 경영자나 도급원을 국가적 상황에 따라 고용원 또는 고용주로 분류

- 취업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지만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급받는 취업자(도제, 수습, 인턴 등)의 명확한 구분이 미흡

□ 가능한 개정 방향

[개정안 I] 법인 소유경영자, 도급원 ⇒ 자영업자

Self-employed	◦Employer - In incorporated enterprise - In unincorporated enterprise	
	◦Own account worker - In incorporated enterprise - In unincorporated enterprise	
	◦Contributing family worker	
	◦Contractor	
	◦Members of producers' cooperative	
Employees	◦Regular employee	
	◦Casual, short-term or seasonal employee	
	◦Employee engaged labour hire company	
	◦Employee in training - paid in cash - paid in kind only - unpaid	
	◦Domestic employee	

[개정안Ⅱ] 법인 소유경영자, 도급원 ⇒ 고용원

Self-employed	◦Employer	
	◦Own account worker	
	◦Contributing family worker	
	◦Members of producers' cooperative	
Employees	◦Employee in own incorporated enterprise - with employee - without employee	
	◦Regular employee	
	◦Casual, short-term or seasonal employee	
	◦Employee engaged labour hire company	
	◦Employee in training - paid in cash - paid in kind only - unpaid	
	◦Domestic employee	
	◦Contractor	

[개정안Ⅲ] 자영업자와 고용원의 이분법을 포기

◦Employer - In incorporated enterprise - In unincorporated enterprise	Employees
◦Own account worker - In incorporated enterprise - In unincorporated enterprise	
◦Contractor	
◦Contributing family worker	
◦Regular employee	
◦Casual, short-term or seasonal employee	
◦Employee engaged labour hire company	
◦Employee in training - paid in cash - paid in kind only - unpaid	
◦Domestic employee	

[개정안Ⅳ] 자영업과 고용원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 유지

Employees	◦Permanent employee	
	◦Temporary employee - Fixed-term - Seasonal - Casual - On-call	
	◦Apprentice, trainee or intern	
	◦Workers on oral agreement	
	◦Domestic employee	
Self-employed	◦Employer - In incorporated enterprise - In unincorporated enterprise	
	◦Own account worker - In incorporated enterprise - In unincorporated enterprise	
	◦Contractor	
	◦Members of producers' cooperative	
Other forms of employment	◦Contributing family worker	
	◦Members of producers' cooperative	
	◦Other forms of employment not elsewhere classified	